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이 표준계약서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대상 불공정 계약관계 방지 등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MCN 사업자의 계약(이하 MCN 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MCN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MCN 계약과 관련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MCN 가입 표준계약서

크리에이터(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_____ (예명:______이하 "크 리에이터")와 회사(MCN사업자)_____ (이하 "회사")는 _____ 채널 (이하 "채널")을 제휴하여 제작 지원,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리, 홍 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 결하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크리에이터"와 "회사",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당사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널"이라 함은 "크리에이터"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YouTube, 아프리카TV, 판도라TV, 곰TV, 틱톡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인터넷 및 모바일 방송 또는 "크리에이터"가 소유하거나 계약 기간 동안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모든 SNS를 포함한 일체의 콘텐츠 공중송신 유통 수단,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제공된 모바일 A pp, 온라인 웹사이트 등 "크리에이터"와 "회사"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는 모든 유통 채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콘텐츠"라 함은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 자막, 썸네일 및 카피라이트, 음원, 브랜드, BI, CI, 이미지 정보 및 이와 관련된 부가(메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다.

3. "MCN"이라 함은 여러 "크리에이터"의 "채널"과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시청자 및 구독자 확보, 콘텐츠 편성, "크리에이터"들의 공동 작업 지원 및 관리, 디지털 권한 관리, 수익 창출 또는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한 마스터 계정이나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글로벌 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의 사업 및 브랜드 일체를 의미한다.

4. "수익"이라 함은 "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각 권한에 따라 제3 자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일체의 매출액에서 "회사"와 "크리에이터"가 본 계 약 또는 별도 서면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내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 미하다.

5. "선급금"이라 함은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회사" 가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명칭을 불문)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말한다.

제3조(계약 기간) ① "크리에이터"와 "회사"의 본 계약은 서명 또는 날인 즉 시 성립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년간 유효하다.

② "크리에이터" 또는 "회사"가 계약 종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및 내용에 대한 변경 요청의사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경우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계약의 자동 연장에 관한 위의 사항을 명확히 고지한다.

제2장 "크리에이터"의 권리와 의무

제4조(채널의 연결) ① "크리에이터"는 "회사"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 ()일 이내에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회사"가 제시하는 가입 절차를 준수하여 "회사"의 "MCN"에 연결하거나 회사의 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크리에이터"는 각 채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받는 계정을 "회사" 가 지정하는 "MCN" 계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본 계약 기간 동안 "MCN"에 연결된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있는 "콘텐츠"의 수익 창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채널"의 홍보와 브랜딩 설정 등을 수했할 수 있다.

제5조(홍보에의 동의) ① "크리에이터"는 "채널"에서 "회사"가 "회사"의 로고 또는 "회사"의 브랜딩 요소를 삽입할 수 있도록 "회사"로 하여금 "크리에이터"의 각 채널 내 편집이 가능한 영역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내 중간 삽입영역, 최종 슬레이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보유한 채널 및 SNS, 기타 홍보 수단 중 주석, 링크 및 수동 또는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크로스 프로모션 영역에 회사의 로고와 홍보물을 함께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조건과 범위는 별도 혐의할 수 있다.

제6조(콘텐츠 제공) ① "크리에이터"는 계약기간 동안 "크리에이터"의 각 "채널"에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크리에이터"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올리는 콘텐츠수를 정할 수 있다.

- ②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기간 동안 질병, 입대, 사고, 이민 등 전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 ③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등 "채널"을 탑재한 각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의 채널 운영 및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크리에이터"는 "채널"에 업로드하는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로 인하여 제3자의 권한, 권리 등이 침해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크리에이터"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책임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크리에이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적절한 콘텐츠 또는 "회사"와 "회사"의 다른 "크리에이터" 및 "회사"의 광고주 등의 브랜드 가치, 신용, 명예, 이미지, 기타 정당한 이익 등을 훼손 또는 비방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업로드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콘텐츠 수정삭제청구권) ①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법령위반, 사회상 규 위반, 사회적 물의,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문제되는 "콘텐츠"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제공하는 채널 운영 및 콘텐츠 기획, 제작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서비스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건전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제작의 제한 등) ① "크리에이터"는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영리활동 또는 부가 사업을 하거나 이를 위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크리에이터"는 타 채널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회사"에 속하지 않은 타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콘텐츠"를 공동제작 또는 컬래버레이션 활동 을 하는 경우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창출을 위한 협력의무) ①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제휴하여 제작 지원, 저작권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내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회사 내 다른 크리에이터들과의 컬래버레이션 콘텐츠 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③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전항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출연 등의 제한)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의 명예, 이미지, 신용, 이익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회사가 "회사"의 "채널" 이미지 상승을 위한 것이거나 "콘텐츠" 홍보와 관련한 출연, 기타 광고 출연, 행사 및 사업참여 등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권) ① "크리에이터"가 단독으로 기획,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회사가 제공한 프로모션 (폰트, BGM 등)을 이용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크리에이터에게 있다.

- ② "회사"가 단독으로 기획, 제작한 콘텐츠에 "크리에이터"가 출연하여 채널에 업로드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귀속된다.
- ③ "회사" 및 "크리에이터"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귀속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지분 비율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 ④ 광고주 또는 제3자와의 용역 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해당 용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⑤ 회사가 "크리에이터"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비용으로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을 활용한 상표, 디자인 등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귀속되고 크리에이터는 계약 기간 내 사용권을 가진다.
- ⑥ 회사는 계약 기간동안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크리에이터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크리에이터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크리에이터의 명예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이 아닌 범위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은 즉시 소멸된다.
- ⑦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다.

제12조(수익배분) ①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채널에 대한 연결과 제13조 독점배타적 권한을 부여한 대가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크리에이터"는 "회사"에게 다음의 수익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 1. "크리에이터"의 각 채널로 인해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광고 수익의 ()%
- 2. "크리에이터"의 각 채널과 관련하여 일체의 상업적 계약으로 "회사"가 상 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익의 ()%
- 3. "회사"가 "크리에이터"를 광고모델, 방송 출연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의 ()%
- 4. 기타 상호 별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
- ③ "크리에이터"는 "회사"에 대하여 수익의 정산서와 이를 증명할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크리에이터"는 "회사"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한 비율과 지급 시기에 따라 수익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크리에이터가 사전에 협의하여 회사가 선지출한 비용은 크리에이터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할 비용이 10만원 미만의 경우 정산을 최대 3개월 내로 유보할 수 있다.
- ⑤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하며, 외화로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 당월 말인 OO 은행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원화를 환전한다.
- ⑥ "크리에이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으며,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를 통해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고 연체 시에는 연 ()%의 지연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송금 관련 결제 처리 수 수료를 크리에이터(또는 회사)의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⑧ 각 채널의 플랫폼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산일과 정산방식의 변경 이 있는 경우 "회사"는 상기 지급조건에 따라 "크리에이터"와 협의하여 서면 (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회사"의 권리와 의무

제13조(독점배타적 권리) ①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회사"에 연결된 "크리에이터" 채널의 콘텐츠를 독점배타적으로 수익 창출 관리, 소유권 주장 및 채널의 브랜딩 설정 등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 ② "크리에이터"는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독점배타적으로 부여하고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본 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1. "크리에이터"의 채널의 콘텐츠 등의 관리를 통해 "회사"가 직접 광고형 콘텐츠를 제작, 판매하거나 이벤트, 프로모션 등 상업적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2. "크리에이터"의 채널의 콘텐츠 등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이용하 거나 수정하여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등 머천다이징, 커머스, 라이선스 계약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3. 회사의 각 채널 또는 플랫폼 등을 통해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채널의 콘텐츠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수정,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4. "크리에이터"가 참여, 출연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및 브랜디드 콘텐츠 또는 광고 콘텐츠의 기획, 영업,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는 상업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5. "크리에이터"의 초상, 성명, 사진 등 "크리에이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일체의 요소를 활용하여 캐릭터, 로고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지식재산권화, 머천다이징, 이용 허락 등을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
- 6. "크리에이터"의 방송 출연, 광고모델 출연, 행사 참여 등 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
- 7. 그 밖에 "크리에이터"가 별도의 약정으로 "회사"에게 부여한 권리

제14조(수정 및 삭제의 제한) ① "회사"는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크리에이터"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콘텐츠를 수정하는 경우 크리에이터와의 혐의를 통해 수정내용과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의적으로 "크리에이터"의 채널 및 콘텐츠

를 수정,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크리에이터"의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크리에이터와 사전에 혐의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채널 운영사 정책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콘텐츠 저작권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기술적 오류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밖에 "크리에이터"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크리에이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수익을 위한 관리) ①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채널 구독자 수, 시청지속기간, 조회 수, 전환율 등 채널의 수익 및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관리, 프로모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채널 운영관리 및 콘텐츠 기획, 제작, 홍보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회사" 보유 솔루션, 도구, 시설, 장비 및 기타 크리에이터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회사" 내 다른 "크리에이터"들과의 컬래버레이션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12조 제2항 각호의 수익 등을 정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채널 수익 외 제13조에 규정된 "회사"에 부여된 독점배타적 권리와 관련된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크리에이터의 보호) ①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신용, 명예, 이미지, 브랜드 가치, 이익 등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러한 내 용의 콘텐츠 제작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출연 또는 참여가 필요하거나 "크리에이터"의 초상, 성명, 채널 브랜드, 상표 등을 이용한 사업 진행 시에는 사전에 "크리에이터"에게 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공유하고 협의한 후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제3자와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크리에이터"와 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협의한 후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제3자와의 계약 기간이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을 도과할 경우 그 계약은 계약 기간 내에서만 유효하며 계약 기간 이후에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 ⑤ "회사"는 "크리에이터"가 독자적인 콘텐츠 개발 및 구독자 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채널 운영 및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채널의 매월 각종 수익 관련 지표 현황과 사업별 수익 정산 현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크리에이터"가 수익 정산에 대한 증빙 또는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회사가 기획, 제작하거나 지시 또는 관여한 콘텐츠, 광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손해가 밤새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다.

제4장 분쟁의 예방 등

제17조(권리의 확인) "크리에이터"는 제3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만약 "크리에이터"가 계약 체결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함께 서명하기로 한다.

제18조(비밀의 유지) ① "회사"와 "크리에이터"는 계약 기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제공한 서비스 및 계약 조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② "회사"와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은 수단, 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자산 등을 비롯하여 업무상의 비밀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며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책임은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 또는 "크리에이터"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무 이행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이내에 이행 또는 시정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 또는 "크리에이터"는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명예, 신용, 이익을 훼손시키거나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회이상 하는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③ "회사" 또는 "크리에이터"가 파산 또는 회생 신청, 어음부도, 강제집행 등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크리에이터"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 직전 ()개월 평균 상대방 월 수익 x 계약 잔여개월수』에 상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기로 하되,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지급받은 계약금(선급금)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일은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제21조(계약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의 처리) ① "회사" 또는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물, 브랜드, 상표, 로고, 디자인, 초상, 성명 등에 대한 이용 권한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의 종료 시점에 소멸된다. 다만 계약 기간 중 유효하게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은 제3자와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며, "회사"의 정산 의무도 존속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즉시 채널을 "MCN"에서 연결 해제하여 야 하고 "회사"가 이를 지체하는 경우 "크리에이터"는 직접 채널 운영사에게 액세스 권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크리에이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널 내 콘텐츠 중 "회사"나 제3자에게 단독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채널에서 삭제하고 원본을 "회사"에게 양도한 뒤 사본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④ "회사"와 "크리에이터"에게 공동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이용 및 수익배분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른다.
- ⑤ "크리에이터"의 초상, 성명,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회사" 또는 제3자의 기획과 비용으로 제작한 2차적 저작물 및 콘텐츠의 경우에는 다른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2차적 저작물 및 콘텐츠로인하여 "회사"에게 매출이 발생하는 동안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산 의무가존속하다.
- ⑥ "크리에이터"의 초상, 성명,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회사"의 기획과 비용으로 출원, 등록, 관리한 상표 또는 디자인권은 "크리에이터"가 "회사"에게 당시의 가치평가액을 대가로 지급하고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이전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2조(세금) ① "크리에이터"는 "회사"로부터 받은 수익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②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수익에서 원천징수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크리에이터"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신의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와 "크리에이터"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 저작권위원회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 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쌍방의 합의로 「중재법」상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신청을 통해 해결하되, 일방이 합의에 의한 중재 신 청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따른 소송으로 해결한다.

"회사"와 "크리에이터"는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인)

"크리에이터"

성명 :

예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성명: (인)

<"크리에이터"의 법정대리인: "크리에이터"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성명: (인)